





### Ⅲ. 입주 사전 지원 계획

[예시]

○ 입주 예정자 지원계획 수립

- 
- 
- 
- 

○ 이사지원

- 
- 
- 
- 

○ 행정절차 지원

- 
- 
- 
- 

### Ⅳ.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

#### □ 입주자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예시] 입주·퇴거 지원	• •	[예시] • 입주 후, 한달 이내 • 퇴거 결정 후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 •	• 서비스제공 기간 내 수시 제공
건강관리지원	• •	
자치활동지원	• •	
주거유지·관리 지원	• •	• 서비스제공 기간 내 수시 제공 • 유지보수 필요시
사회복지제도 지원	• •	• 필요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 •	
커뮤니티 공간운영	• •	

□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지원계획

연계 분야	연계 기관	연계 내용
[예시] 공공기관	00경찰서	입주민 치안 등 안전사고 관련 연계
	00소방서	입주민 화재, 질병 등 안전사고 관련 연계
	00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신청,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지원 등
사회복지기관		
취업지원		
권익옹호 기관		

V. 기타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예시] 운영회의	•	
자조모임	•	
유관기관 네트워크	•	

## VI. 사업 성과

### □ 성과 및 지표

※주거유지율, 주거이탈률, 정신병원 입원율, 위험음주율 개선도, 사회적 관계 향상도(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마지막 장에 첨부)는 필수구성이며 성과지표의 달성 값은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기관 형편에 따라 설정함. 이외 성과지표는 기관 자체 계획으로 작성함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시] 안정적 주거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주거유지율: 87.2%</li> <li>• [예시] 주거이탈률: 전체 입주민 규모 대비 3년 평균 15% 미만</li> <li>•</li> <li>•</li> </ul>
정신건강 및 알코올 중독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정신병원 입원율: 전체 입주민 규모 대비 3년 평균 15% 미만</li> <li>• [예시] 위험음주율 개선도: 사전 측정값 대비 5.0%p 이상 긍정적 변화</li> <li>•</li> </ul>
사회적지지 확장 및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사회적 관계 향상도: 사전 측정값 대비 0.2점 이상 긍정적 변화</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 □ 기대효과

— [예시] 안정적인 증상관리를 통한 건강회복으로 병원 입원기간 축소, 거리노숙 예방 등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만성 노숙인의 탈노숙 욕구 촉진

—  
—  
—  
—  
—

VII. 연간 사업비 집행계획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자부담률 %

• 연도별 사업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총계	(100%)	( %)	( %)	( %)
	보조금	(100%)	( %)	( %)	( %)
	자부담	(100%)	( %)	( %)	( %)
	보조금	(100%)	( %)	( %)	( %)
	자부담	(100%)	( %)	( %)	(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사 업 비 내 역			
구분	지출비목	금액(천원)	산출근거
지원금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자부담	운영비	2023	
		2024	
합계			

※자부담 조달계획

구분	지출항목	금액(천원)	비고
계			
	법인(단체)보조금		
	법인(단체)수익사업수입	-	
	후원금	-	
	기타	-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예시]211,203	
지방보조금(소계)			210,623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 과 연계)	인건비	단순인건비		• 슈퍼바이저            원 • 코디네이터1            원
		사회보장비		•
		퇴직적립금		•
		복리후생비		•
	사업비	사례관리지원비	3,420	• 15,000원×19명×12개월=3,420,000원
		자치회의비	2,280	• 10,000원×19명×12개월=2,280,000원
	운영비	임대료		•
		물품구입비		•
		기타운영비		•
	자부담(소계)		580	
운영비	기타운영비	580	• 580,000원×1식=580,000원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첨부: 사업성과 필수 구성 지표 내용 및 측정 산식

- 사업계획서 IV. 사업성과의 목표 값을 설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주택운영협약 만료 도래 시 실시되는 주택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성과지표임

① 주거유지율: 평가 시점까지 70% 이상

지원주택 위탁운영 기간	정원 (명)	총 입주민 규모 (명) [A]	지속거주 입주민 규모 (명) ※평가 시점 전월 기준 [B]	퇴거자 규모(명)						주거 유지율 (%)  ※소수점 첫째 자리 [D]=[B/A]×100
				지역 사회 독립 거주	시설/ 병원 입소	사망	무단 이탈/ 연락 두절 등	교정 시설 수감	소계 [C]	
운영 시작 월-서울시 주택성과평가 시점 전월 말 기준  ※4월 평가 시 3월 31일 기준	(예시) 17	16	14	0	2	0	0	0	2	87.5%= [14/16]×1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민의 고령화로 병원입원 지역사회 독립거주처럼 긍정적 퇴거 등으로 주거유지율 70% 이상 어려울 경우 사유 작성</li> <li>• 결과값 외 해당 지표에 대한 질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도 있음</li> </ul>									

② 주거이탈률: 연락두절 등으로 1주일 이상 무단이탈하거나 무단이탈하여 거리 노숙을 하는 경우

※실인원 산정방법: 입주민 1명이 1년 동안 1주일 이상 무단이탈한 횟수가 5번이었다라도 1명으로 산정

지원주택 위탁운영 기간	총 입주민 규모(명) [A]	1주일 이상 주거이탈 실인원(명) [B]	주거이탈률(%) ※소수점 첫째 자리 [C]=[B/A]×100
1차 연도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예시) 16	4	25.0%=[4/16]×100
2차 연도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17	2	11.7%=[2/17]×100
3차 연도 (해당 연도 서울시 주택성과평가 시점 전월 말 기준)	17	2	11.7%=[2/17]×100
3년 평균		16.1%=[25.0%+11.7%+11.7%]/3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이탈률(변화)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배경 등 작성</li> <li>• 결과값 외 해당 지표에 대한 질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도 있음</li> </ul>		

③ 정신병원 입원율: 연도별 3개월 이상 정신병원 입원한 경우

※실인원 산정 방법: 입주민 1명 1년 동안 3개월 이상 정신병원 입원 3회 했어도 1명으로 산정

지원주택 위탁운영 기간	총 입주민 규모(명) [A]	3개월 이상 정신병원 입원 실인원(명) [B]	정신병원 입원율(%) ※소수점 첫째 자리 [C]=[B/A]×100
1차 연도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예시) 16	3	18.7%=[3/16]×100
2차 연도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17	3	17.6%=[3/17]×100
3차 연도 (해당 연도 서울시 주택성과평가 시점 전월 말 기준)	17	2	11.7%=[2/17]×100
3년 평균		16.0%=[18.7%+17.6%+11.7%]/3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민의 정신병원 지의 입원은 병식을 인식하고 치료 의지를 나타내는 긍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병원 입원율이 높을 경우 사유 작성</li> <li>• 결과값 외 해당 지표에 대한 질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도 있음</li> </ul>		

④ 사회적 관계 향상도

— 측정도구: 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제시 WHOQOL 중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지표는 의미 전달명확성 미흡 문항이 존재하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개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 적용

※사회적 관계 향상도 측정 도구(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 6개 문항의 입주민 개별 평균점수가 ‘0’에 가까우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낮은 수준으로 긍정적이며 ‘3’에 근접할수록 고립도가 높아 부정적임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Scale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

최근 한 달간 자신의 상태를 잘 설명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세요.

1.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0. 거의 그렇지 않다.	1. 다소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2.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0. 거의 그렇지 않다.	1. 다소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3.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3. 거의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지 않다.	1. 다소 그렇다.	0. 매우 그렇다.
4. 나의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거의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지 않다.	1. 다소 그렇다.	0. 매우 그렇다.
5.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가족, 친척, 친구 포함)	3. 0명	2. 1-2명	3-6명	0. 7명 이상

6. 친구나 가족과 사적인 연락을 하는 데 하루 중 평균 몇 분 정도를 사용하십니까?(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3. 전혀 안 함	2. 15분 이하	15분-1시간	0. 1시간 이상
---	-----------	-----------	---------	-----------

— 사회적 관계 향상도 측정 시기 및 산식: 사회적 관계는 단기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연차별 사전·사후 측정이 아닌 입주 후 2주일 이내 또는 (재)협약체결 후 2주 이내(사전)와 운영 3년차 주택성과평가지점(사후) 비교

※ 사회적 관계 변화 점수가 마이너스(-) 경우 긍정적이며 플러스(+)는 부정적임

(긍정적 결과 예시)  $2.0(\text{사후}) - 2.5(\text{사전}) = (-)0.5$

(부정적 결과 예시)  $2.5(\text{사후}) - 2.1(\text{사전}) = (+)0.4$

구분	측정점수(3점 만점) ※입주민 전체 평균점수	변화 점수(부정적+/긍정적-) ※사후-사전
사전 ※입주 후 2주일 이내(신규 주택 최초 협약 체결 시) 또는 (재)협약 체결 후 2주 이내	(예시) 2.5	2.3-2.5=(-)0.2
사후 ※서울시 주택성과평가 시점 전월 기준	2.3	

비고

- 부정적 변화 경우, 사후 평가시점 입주민 삶의 이슈(예시: 회복된 가족관계 약화 및 단절, 친한 이웃 이사, 지역기관 서비스 이용 중단, 건강 악화 등)나 주택운영 협약기간과 평가지표 적용 시기 차이로 사전 및 사후 비교 기간 짧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등 사유 작성
- 경우에 따라 2~3차 운영협약 기간 동안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한 성과(예시: 6년 정도의 장기 주택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변화가 있었고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제시

⑤ 위험 음주율 개선도: 연도별 전체 입주민 위험 음주도 측정

— 측정 도구: AUDIT-k는 위험음주자의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해 개발된 척도이지만 입주민 음주수준의 변화(정상음주, 위험음주, 알코올사용장애)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 가능

한국어판 위험 음주자 선별도구(AUDIT-K)

이름(성별)	생년월일	실시일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자신에게 알맞은 답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0점	1점	2점	3점	4점
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전혀 마시지 않는다	한달에 한번 미만	한달에 2~4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회 이상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 잔 정도나 마십니까?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 나가기 위해 다시 해장술을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2점)		지난 1년간 있었다 (4점)	
10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2점)		지난 1년간 있었다 (4점)	
각 칸별로 점수를 더해주세요						
총점						
척도명	한국어판 위험 음주자 선별도구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 AUDIT-K)					
출처	조근호, 채숙희, 백애란, 이해국, 신임희, 민성호(2009). 위험 음주자의 선별을 위한 한국어판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K)의 최적 절단값.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13(1). 34-40					

대상	성인																								
측정내용	위험음주자의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해 음주량, 음주행위, 음주형태, 정신-사회적 문제 등의 문항으로 구성																								
총문항수	10문항																								
절단점수	• 남: 10점 • 여: 6점																								
소척도	없음																								
결과해석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별</th> <th>점수</th> <th>분류</th> <th>설명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남</td> <td>0~9</td> <td>정상음주</td> <td>'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td> </tr> <tr> <td>10~19</td> <td>위험음주</td> <td>'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td> </tr> <tr> <td>20 이상</td> <td>알코올 사용장애</td> <td>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td> </tr> <tr> <td rowspan="3">여</td> <td>0~5</td> <td>정상음주</td> <td>'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td> </tr> <tr> <td>6~9</td> <td>위험음주</td> <td>'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td> </tr> <tr> <td>10 이상</td> <td>알코올 사용장애</td> <td>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td> </tr> </tbody> </table>	성별	점수	분류	설명예시	남	0~9	정상음주	'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9	위험음주	'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	0~5	정상음주	'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6~9	위험음주	'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0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별	점수	분류	설명예시																						
남	0~9	정상음주	'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9	위험음주	'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	0~5	정상음주	'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6~9	위험음주	'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0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Thomas Babor & WHO      • 2차: 조근호																								
사용 승인여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저자 승인없이 출처표기하고 사용 가능. 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온라인상 혹은 타인에게 배포, 복제, 변형하고자 할 때는 저자의 승인 필요																								
비용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시 무료																								

— 위험 음주율 개선도 측정 시기 및 산식: 노숙인 지원주택에서는 단주 강요보다는 위험한 음주행동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위험을 줄이는 지원을 추구하기에 단기간 음주수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연차별 사전·사후 측정이 아닌 입주 후 2주일 이내 또는 (재)협약체결 후 2주 이내(사전)와 운영 3년차 주택성과평가지점(사후) 비교

※위험 음주율 개선도(%p) 점수가 마이너스(-) 경우 긍정적이며 플러스(+)는 부정적임  
 (긍정적 결과 예시) 15%(사후)-20%(사전)=(-)5%p  
 (부정적 결과 예시) 20%(사후)-10%(사전)=(+)10%p

구분	총 입주민 규모(명) [A]	위험음주자 규모(명) ※위험음주/알코올사용장애 [B]	위험 음주율(%) [C]=[B/A]×100	위험 음주율 개선도(%p) (부정적+/긍정적-) ※사후-사전
사전 ※입주 후 2주일 이내 또는 (재)협약 체결 후 2주 이내	(예시) 12	3/3	50.0%=[6/12]×100	(-)14.4%p= 35.7%-50.0%
사후 ※서울시 주택성과평가 시점 전월 기준	14	2/3	35.7%=[5/14]×1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결과일 경우, 사후 평가시점 입주민 상황(예시: 입주 당시 위험음주자 다수, 회복된 가족관계 악화 및 단절 가족·지인 등 사망, 일자리 상실, 건강 악화 등)이나 주택운영 협약기간과 평가지표 적용 시기 차이로 사전 및 사후 비교 기간 짧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등 사유 작성</li> <li>• 경우에 따라 2~3차 운영기간 동안의 위험 음주율 개선도에 대한 성과(예시: 6년 정도의 장기 주택생활을 통해 위험음주율이 확연히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위험음주에서 알코올사용장애로 전이되는 사례는 매우 적음 등) 제시</li> </ul>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 ·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 · 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사항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공적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 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 (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자 겸 채권양수인	성 명	<i>서비스제공기관명</i>	서명날인
	주 소	<i>서비스제공기관 주소지</i>	
채권양도인 (임차인)	성 명	<i>입주민 성명</i>	서명날인
	주 소	<i>입주민 지원주택 주소지</i>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표시 채권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 [양도채권의 표시]

물건의 표시	<i>입주민 지원주택 주소지</i> <i>예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00-0 우아빌 00호</i>
채권의 종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금
양 도 금 액	금                      원 (W                      원 )
제3 채무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소	<i>입주민 지원주택 주소지</i>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채 무 자	(인)
양 도 인 (임 차 인)	(인)
양 수 인	(인)

첨부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발신) 원본 1부

3. 양도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본인 발급 분)

※인감증명서가 없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채권 양도 통지서

### [수신인 - 임대인]

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소	관할지역 SH 주거안심종합센터 주소지

### [양도채권의 표시]

물건의 표시	입주민 지원주택 주소지 예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00-0 우아빌 00호
채권의 종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금 전부
양도 채권액	금                      원 ( ₩                      원 )
양도 일자	0000년 00월 00일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동 채권을 양수인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성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연락처: 02-0000-0000)
	주소	서비스제공기관 주소지

### [발신인 - 양도인 겸 통지인]

양도인	성명	입주민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입주민 지원주택 주소지

채권 양도 통지서 (양수인 발신)

[수신인 - 임대인]

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소	관할지역 SH 주거안심종합센터 주소지

[양도채권의 표시]

물건의 표시	입주민 지원주택 주소지 예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00-0 우아빌 00호
채권의 종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금 전부
양도 채권액	금 원 (W 원 )
양도 일자	0000년 00월 00일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동 채권을 양수인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인	성명	입주민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입주민 지원주택 주소지		

[발신인 - 양수인 겸 통지인]

양도인	성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연락처: 02-0000-0000 )
	주소	서비스제공기관 주소지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위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인 서비스제공기관명 에게 다음 채권을 전액 양도하였는바, 양도한 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채권양수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제공기관	기관명			
	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입주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주택면적	m <sup>2</sup>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000(이하“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함)와 000(이하“입주민”이라고 함)은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원활한 주택이용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입주민”간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제2조(기본원칙)

1. “서비스제공기관”과 “입주민”은 안정적인 지원주택 생활을 위하여 상호간에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한다.
2. “서비스제공기관”과 “입주민”간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제공된다.

### 제3조(제공기관의 주거유지서비스 내용)

1. “입주민”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거유지서비스를 신청한다.
2. 주거유지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상담
  - ② 주택시설관리 지원
  - ③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④ 입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⑤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 ⑥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 ⑦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제4조(입주민의 권리와 의무)

##### 1. “입주민”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 ① “입주민”은 지원주택에 살면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입주민”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주거유지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입주민”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 2. “입주민”이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이용을 위해 협조하여야 할 기본규칙은 아래와 같다.

- ①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은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로 인한 장기입원(1개월 이상)이나 1개월 이상 주택 무단이탈 또는 구금 상황 시라도 주택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으면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지원주택 주거 공간을 “입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주거 공간 관리 지원이 필요시 동의하여야 한다.
- ④ 주거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주택 코디네이터를 최소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대면한다.
- ⑤ 주거 공간 내 주택계약 당사자 “입주민” 이외 동거인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
- ⑥ 주택계약 당사자 외 장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동거인이 생길 경우, 주택공급기관과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개인 및 환경의 변화 발생 시 개인별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⑧ 1주일 이상 주택을 비울 경우, 코디네이터에게 사전에 알린다.
- ⑨ 병원 이용 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나 복용약물, 치료방법, 추후 진료방문 등 병원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코디네이터에게 알린다.
- ⑩ 다른 “입주민”의 집을 방문할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⑪ 다른 “입주민”이나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⑫ 본인, “서비스제공기관”의 직원 및 다른 모든 사람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자타해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

- 1. “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2. “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해야 한다.
- 3. “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민”의 지원주택 생활유지를 위한 다양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제6조(서비스이용 기간)

- 1. “입주민”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 2. 최초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재계약 횟수는 지원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과 맞춘다. 단, 재계약은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서비스이용 재계약 시점에 “입주민”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다.

#### 제7조(서비스이용해지 및 퇴거)

1. “입주민”의 자발적 퇴거 시 “서비스제공기관”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거 시 주거유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은 해지된다.
2. “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민”이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주거유지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3. 퇴거요청사유는 아래와 같다.
  - ① (계약사항이었던)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
  - ②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③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제4조 2항 기본규칙을 어기는 경우
  - ④ “입주민”의 상황이 변화되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 ⑤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판단이 있는 경우
  - ⑥ 이 외에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지원주택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입주민”은 “서비스제공기관”에 퇴거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퇴거결정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5. 퇴거요청사유에 의해 최종 퇴거가 결정된 “입주민”은 “서비스제공기관”에 퇴거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주민”의 자발적 퇴거, 주택계약 종료, 퇴거요청사유에 의한 퇴거 등으로 인해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과 체결한 주거유지서비스 이용 계약 또한 해지된다.

#### 제8조(주택으로의 출입)

1. “서비스제공기관”은 보건, 위생, 방화 그 외 “입주민”의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주택으로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민”이 신변상 위험에 처하거나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입주민”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도 주택으로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병원, 소방서와 연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책임 및 손해배상)

1. 주택 거주기간 동안이나 퇴거 시 “입주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서비스제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천재지변과 그 외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인해 “입주민”이 입게 되는 손해, 재난에 대해 “서비스제공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퇴거 시 “입주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파손의 경우 “입주민”은 그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하거나 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주택공급기관의 주택 유지보수 주기 내에 “입주민”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도배, 장판, 전등기구, 콘센트를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민”은 그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하거나 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기관용)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산하연구기관, 노숙인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상담 및 서비스제공, 연구·조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입주민은 항상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민의 원활한 상담,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및 관련 자원 정보제공
- 지원주택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조사·연구

### 2.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정보, 건강정보, 지원주택 이전 생활정보, 필요 주거유지서비스
- 기타: 향후 서비스제공에 따라 세부 개인정보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주택 이용 종료 및 주거유지서비스 서비스 종료 이후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간(퇴거 후 3년까지)

### 4. 기타

- 입주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주택 서비스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서비스제공기관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 지원주택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조사·연구를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산하연구기관과 같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20 . . . .

입주민 : (인)





## 지원주택 입주민 기초면접지

접수번호		상담자		상담일자	
------	--	-----	--	------	--

### 1. 기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음 ○양 ( 월 일)	연락처	
주택호수		입주일	
학력		종교	
의료보장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지역의료보험 ○기타( )	수급형태	○기초수급권 ○차상위 ○일반 ○기타( )
장애유형 및 정도		직전주거유형	○노숙인 관련 시설 ○고시원 ○노숙인 매입임대 ○기타( )

### 2. 경제사항

직업		월평균 수입액	
월지출액	만원	현재 저축액	만원
부채	만원	부채유형	○대출 ○할부 ○연체 ○기타( )

### 3. 건강상태

정신질환	진단명		치료병원	
	복용약물			
신체질환	질환명		치료병원	
	복용약물			
	수술이력			
음주사항	○전혀 안함 ○함	보통( )주일에( )번	한번 음주 시 소주( 병)/맥주( 병) /막걸리( 병)/기타( 병)	

### 4. 관심사항

관심영역	○주거 ○식사 ○친구(사회적 관계) ○취업 ○문화여가 ○사회봉사 ○가족 ○교육 ○건강 ○경제 ○기타( )				
------	---	--	--	--	--

### 5. 사회관계

위기상황 시 연락 가능	성명/기관:		연락처:	
가족관계	관계	이름	연락처	비고

##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서

입주민 (주택호수)		작성자 (사례관리자)		작성일	
---------------	--	----------------	--	-----	--

### 1. 욕구

#### 1-1 입주민 제시 욕구

	항목	순위	제시 내용
건강 영역	정신건강관리		
	신체건강관리		
	음주관리		
생활 영역	주거지유지관리		
	주택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일상생활관리		
	개인위생관리		
	가사관리		
	금전관리		
	퇴거지원		

항목		순위	제시 내용
사회적 영역	가족관계		
	대인관계		
	문화여가		
	학업 및 직업		
	복지서비스		
	인권 옹호 및 사회적 안전		
기타			

1-2 합의된 목표

구분	합의된 목표(달성 기간 ※단기/장기)	목표에 대한 의견
건강 영역		
생활 영역		
사회적 영역		

## 2. 내·외부 자원 사정

구분	강점	약점
개인		
가족		
환경		

## 3. 지원 목표 및 실천계획

합의된 목표	지원방법	필요자원 및 연계방안

## 개인별 서비스 지원 평가서

입주민 (주택호수)		작성자 (사례관리자)		작성일	
---------------	--	----------------	--	-----	--

### 1.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내용

합의된 지원목표	지원내용	달성정도 및 향후 지원계획

### 2. 종합의견

--

### 3. 기타 논의사항

--

## 주 1회 방문 기록지

방문 세대	입주민 성명	
	주택 주소	
	방문 일시	
	방문자 및 작성자	
일상생활 확인 사항	실내 청결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열악 <input type="checkbox"/> 매우 열악	
	개인 위생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열악 <input type="checkbox"/> 매우 열악	
	식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열악 <input type="checkbox"/> 매우 열악	
정기 진료 및 투약	진료병원:	
	진 료 일:	
	주 호소 증상 <input type="checkbox"/> 불면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환시 <input type="checkbox"/> 환청 <input type="checkbox"/> 기타(                    )	
	처방약물복용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열악 <input type="checkbox"/> 지원 필요	
신체 질환	주 호소 증상:	
	진료계획:	



문제음주 행동에 대한 변화 준비도 질문지(RCQ)

성별	남	여	연령	실시일				
<p>다음은 귀하가 현재 자신의 술 마시는 습관에 관하여 느끼시는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해당되는 한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술을 덜 마신다는 것은 술을 전혀 안 마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답하여 주십시오.</p>								
	문항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모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1	0	1	2
2	나는 술을 전보다는 덜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다.			-2	-1	0	1	2
3	나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실 때가 있다.			-2	-1	0	1	2
4	술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2	-1	0	1	2
5	술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2	-1	0	1	2
6	나는 최근에 술 마시는 습관을 바꾸었다.			-2	-1	0	1	2
7	술 마시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나는 변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2	-1	0	1	2
8	나는 술을 덜 마실 것을 고려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2	-1	0	1	2
9	내가 술을 마심으로써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2	-1	0	1	2
10	나는 술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			-2	-1	0	1	2
11	나는 지금 술 마시는 습관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2	-1	0	1	2
12	술을 덜 마신다는 것이 내게는 의미없는 일이다.			-2	-1	0	1	2

◁평가지에서 기록, 설명해 주십시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아래 칸에 똑같이 기록한 후, 결과를 산출하십시오.

소척도명	문항번호				QUICK		REFINED	
숙고전단계	1	5	10	12	합계	변화단계	부호	변화단계
숙고단계	3	4	8	9				
실행단계	2	6	7	11				

척도명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RCQ)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채영. 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변화전략 수립을 위한 동기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li> <li>• Nick Heather and Stephen Rollnick.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 : User's Manual(revised version). 1993. National Drug and Alcohol Research Centre. Technical Report No.19</li> </ul>		
대상	성인(음주문제로 방문하지 않았으나 과음주가 의심되는 사람)		
측정내용	문제음주 행동에 대한 변화 단계 혹은 변화 동기		
총문항수	12문항		
절단점수	해당없음		
소척도	소척도명	문항구성	정의
	진숙고단계 (Precontemplation:PC)	1, 5, 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시작할 의사가 없음</li> <li>• 문제인식에 비자발적이고, 변화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li> </ul>
	숙고단계 (Contemplation:C)	3, 4, 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시작할 의사가 있음</li> <li>• 변화에 대한 양기감정을 갖고 있으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함</li> </ul>
	실행단계 (Action:A)	2, 6,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내에 행한 명백한 행동변화</li> <li>• 자신의 행동과 경험, 환경의 수정을 실행함</li> </ul>
결과해석	<p>※채점규칙</p> <p>1. 동점규칙 : 변화는 숙고전-숙고-실행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우측에 있는 척도가 우세한 것으로 결정. 예) 숙고전-숙고-실행의 점수가 각각 -7, +5, +5 라면 실행단계로 결정, -3, -3, -4 라면 숙고단계로 결정, +1, -2, +1 이라면 실행단계로 결정</p> <p>2. 무응답점수 : 한 문항만 무응답인 경우 나머지 세문항 점수의 평균을 부여하고 합을 구함. 무응답이 두 문항 이상인 경우는 계산할 수 없고 무효과일로 간주함</p> <p>&lt;Quick Method&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소척도로 현재 속한 변화단계를 결정</li> <li>• 시간이 촉박할 경우만 사용</li> </ul>		

### 지원주택 입주민 만족도 종합평가서

본 설문은 귀하께서 지원주택 입주 후 경험한 생활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더 나은 지원주택 운영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 결과로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신체적 건강이 더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신적 건강이 더 좋아졌다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 등의 감소)	①	②	③	④	⑤
3. 주거환경이 더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생겨서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이외에,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친구, 이웃, 지인, 직장동료, 기관실무자 등)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7. 일상 또는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금전관리 능력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용불량, 채무 등의 법률문제가 해결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공적지원을 받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공공기관(주민센터)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경험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역사회시설 이용에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원주택에 오랫동안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주1) '해당없음'이란 원래부터 해당 문항에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 표시함. 가족이 없거나(5번), 일을 하지 않는 경우(8번), 신용불량이나 채무 등 법률문제가 없는 경우(11번) '해당없음'에 표시.

주2) 12번의 '공적지원'은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현금 및 현물 지원과 서비스를 말함(기초보장, 각종 연금, 사회서비스 등 포함)

한국어판 위험 음주자 선별도구(AUDIT-K)

이름(성별)	생년월일	실시일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자신에게 알맞은 답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0점	1점	2점	3점	4점
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전혀 마시지 않는다	한달에 한번 미만	한달에 2~4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회 이상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 잔 정도나 마십니까?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5	지난 1년간 당신은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6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 나가기 위해 다시 해장술을 필요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매일 같이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2점)		지난 1년간 있었다 (4점)	
10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2점)		지난 1년간 있었다 (4점)	
각 칸별로 점수를 더해주세요						
총점						

척도명	한국어판 위험 음주자 선별도구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 AUDIT-K)																										
출처	조근호, 채숙희, 백애란, 이해국, 신임희, 민성호(2009). 위험 음주자의 선별을 위한 한국어판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K)의 최적 절단값.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13(1). 34-40																										
대상	성인																										
측정내용	위험음주자의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해 음주량, 음주행위, 음주형태, 정신-사회적 문제 등의 문항으로 구성																										
총문항수	10문항																										
절단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 10점</li> <li>• 여: 6점</li> </ul>																										
소척도	없음																										
결과해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성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10%;">분류</th> <th style="width: 70%;">설명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남</td> <td style="text-align: center;">0~9</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상음주</td> <td>'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19</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험음주</td> <td>'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알코올 사용장애</td> <td>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상음주</td> <td>'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9</td> <td style="text-align: center;">위험음주</td> <td>'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알코올 사용장애</td> <td>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td> </tr> </tbody> </table>			성별	점수	분류	설명예시	남	0~9	정상음주	'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9	위험음주	'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	0~5	정상음주	'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6~9	위험음주	'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0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성별	점수	분류	설명예시																								
남	0~9	정상음주	'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9	위험음주	'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	0~5	정상음주	'정상음주군'에 속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6~9	위험음주	'위험음주군'으로 음주에 대한 단기개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0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척도 결과, '사용장애추정군'으로 신체증상, 불안, 불면, 사회부적응, 우울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과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 Thomas Babor &amp; WHO</li> <li>• 2차 : 조근호</li> </ul>																										
사용 승인여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저자 승인없이 출처표기하고 사용 가능. 그러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온라인상 혹은 타인에게 배포, 복제, 변형하고자 할 때는 저자의 승인 필요																										
비용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시 무료																										

##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Scale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

최근 한 달간 자신의 상태를 잘 설명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세요.

1.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0. 거의 그렇지 않다.	1. 다소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2.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0. 거의 그렇지 않다.	1. 다소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3.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3. 거의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지 않다.	1. 다소 그렇다.	0. 매우 그렇다.
4. 나의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거의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지 않다.	1. 다소 그렇다.	0. 매우 그렇다.
5.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가족, 친척, 친구 포함)	3. 0명	2. 1-2명	3-6명	0. 7명 이상
6. 친구나 가족과 사적인 연락을 하는데 하루 중 평균 몇 분 정도를 사용하십니까?(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3. 전혀 안 함	2. 15분 이하	15분-1시간	0. 1시간 이상

##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순번	질문	예	아니오
1	당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 저하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당신은 기억력이 동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당신은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당신은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당신은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당신은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당신은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당신은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당신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당신은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당신은 가스불이나 전깃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당신은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개 항목 이상에 '예'라고 표시될 경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아보십시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기억감퇴가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등 반환신청서

### 1. 해지신청 주택의 표시

해지신청 주택내역				해 지 신청일	명 도 예정일	해지사유
단지명	동,호수	계약자	생년월일			

### 2. 임대보증금 등 반환청구 및 계좌입금

#### ○ 납부금액

구 분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처분제한		
	계	계약금	잔금	전환	할증(증액)	유형	금 액	채권자(양수인)
금 액								

#### ○ 공제금액

합계(원)	위약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복구비	기타( )

#### ○ 반환예정금액(납부금액-공제금액)

구분	반환금액(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비고
계약자반환						
채권자반환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1개월이내 발급분-본인 접수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임대료,공과금,관리비 최종 납부영수증 각 1매, 계약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계약자 명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미동의 합니다.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반환대상 확인, 반환 청구시 필요 정보수집 및 이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증금 반환시 입금계좌 및 예금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시부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처리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본인은 귀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며,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 약관에 따라 처리함에 동의하며 위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계약자 : (인)

대리인 : (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 등 승계승인 신청서

상속인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 주택 의 표시	위치:						
	계약면적(m <sup>2</sup> )				임대보증금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용자금 만원, 상환기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권양수 및 임대보증금반환 청구권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기간				사망일시	년	월 일

위 임차인(피상속인)과 귀공사와 임대계약 체결된 위에 표시된 임대주택 임차인의 사망으로 공공주택법 제49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임차권의 양수 및 임대보증금반환 청구권을 승인 신청하며 신청인 이외 나머지 상속인은 이를 모두 포기하고 차후 위 임대 임대주택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하오니 위 신청인에게 임차인의 지위 및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정보주체는 서울시주택공사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차권의 양수 및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승인에 관한 필요 정보 수집 및 이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시부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속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동의인 날인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갈음합니다.

구 분	개인정보동의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인 (상속인)	동의/미동의	(인)			
상 속 동의인	동의/미동의	(인)			
		(인)			
		(인)			
<b>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b>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li> <li>- 상속인 주민등록등본(세대주변경) 및 초본(주소변경사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 1통</li> <li>- 신청인(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통</li> <li>-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계약서 1통(분실시 분실 신고서)</li> <li>- 임대료 및 관리비 최종월 납부영수증 - 기타(행불자 등 이행각서-공증)</li> </ul> <p>※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등(입주자격요건 증명서): 신청인(상속인)</p>				

지원주택 퇴거 및 서비스 종료 신청서

입주민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지원주택 주소			
입주일	20 년 월 일	퇴거희망일	20 년 월 일
퇴거사유			
퇴거 후 계획			

**【지원주택 퇴거 안내사항】**

1. 지원주택 퇴거신청은 주택 퇴거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2. 퇴거희망일 이전까지 퇴거지원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이후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중단됩니다.
3. 퇴거 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약해지와 별도로 지원주택 퇴거를 위한 임대차계약해지가 필요합니다.

상기 본인은 지원주택 퇴거 안내사항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지원주택 퇴거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종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입주인 (인)

[서비스 제공기관명] 귀중

## 지원주택 퇴거 동의서

입주민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지원주택 주소			
입주일	20 년 월 일	퇴거희망일	20 년 월 일
퇴거 후 계획			

### 【지원주택 퇴거 원칙】

1. 지원주택 퇴거는 주택 퇴거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2. 퇴거예정일 이전까지 퇴거지원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이후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중단됩니다.
3. 퇴거 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약해지와 별도로 지원주택 퇴거를 위한 임대차계약해지가 필요합니다.
4. 퇴거일 이후 주택 내 보관한 개인물건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지원주택 퇴거 원칙에 동의하며,  
지원주택 퇴거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자

(인)

[ 서비스 제공기관명 ] 귀중

### 지원주택 퇴거 및 서비스 종료요청 의견서

요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서비스 종료 대상 입주인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지원주택 주소			
	입주일	20   년   월   일	계약만료일	20   년   월   일
퇴거사유	<i>지원주택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명시된 해당 퇴거사유</i>			
퇴거 후 계획	<i>입주민 퇴거 이후 주거형태, 서비스 연계여부 등</i>			
기타 소견	<i>주거유지지원서비스 이행 여부 등 퇴거 및 서비스 종결과 관련되는 기타 의견</i>			

서비스제공기관명에서 서비스 제공 중인 지원주택 입주인 000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주택 중도 퇴거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종료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귀중

## 지원주택 퇴거 및 서비스 종료 결정 이의 신청서

서비스 종료 이의 신청 입주민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지원주택 주소			
	입주일	20   년   월   일	계약만료일	20   년   월   일
	퇴거예정일	20   년   월   일	퇴거사유	
서비스제공 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입주민 퇴거 이후 주거형태, 서비스 연계여부 등		

서비스제공기관명에서 서비스 제공 중인 지원주택 입주민○○○은 위와 같은 사유로 지원주택 퇴거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종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입주민

(인)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귀중

